

第97回(定期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財務建設委員會會議錄

第 5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9年12月21日(火) 11時00分

場 所 財務建設委員會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淸進區域第6地區 都心再開發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面
3. 淸進區域第6地區 都心再開發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 13面

(11時00分 開議)

○委員長 吳弼根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7回 鐘路區議會 定期會 第5次 財務建設委員會 開議를 宣布합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11월 24日 개최한 '99년도 정기회가 오늘로 27일간의 강행군을 해왔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란 의원 신분엔 생업이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의 노력이 앞으로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독특한 특산물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지방 성격에 맞는 축제와 국제 행사 유치로 발전의 기반을 다져 다양한 청사진과 시책으로 2000년의 중심이 되는 종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다룰 안전에 대해서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슬기로운 지혜로 고견을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金景良 議事擔當!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議事擔當 金景良 議事擔當 金景良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9년 12월 1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심재개발지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99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같은 날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종로구수주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景良 議事擔當!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오늘 안전이 재무국 2건, 도시관리국 1건입니다. 재무국 안전 2건은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04分)

○委員長 吳弼根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金賢植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金賢植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財務建設委員會 吳弼根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한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고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99년 11월 1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시설의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간소화와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을 인하하였습니다. 주택개발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시 분할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 대부료 변상금의 요율을 완화하였으며 공유재산의 대부·사용을 공개 입찰하였으나 사용 희망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

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와 국유재산제도의 준용 범위를 정한 내용들입니다.

존경하옵는 吳弼根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사항임을 심분 이해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吳弼根 金賢植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9년 12월 13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99년 4월 3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고 새로운 시대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 필요한 외국 투자자의 유치나 벤처기업의 지원, 육성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또 불합리한 일부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번 개정사항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총 25개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인데 이를 간추려보면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해야 되는 조문이 6개 조문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문이 8개 조문이며 나머지 11개 조문

은 일부 자구만을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관계조항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벤처기업의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의 대부료를 최저요율을 적용하도록 해서 이를 적극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도시개발 촉진 분야에서는 주택재개발 시행지구 내 구유지를 20년부로 매각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저소득 시민 보호를 위해서 시유지상의 사유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에 생활보호자의 경우 거주주택의 대부요율을 10/1000으로 종전의 25/1000에서 대폭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구수정과 일반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원 인별로 조문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6개 조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문 16조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불용재산의 처분사항에서 영과 중복되는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1조의2에서는 재개발구역 내의 구유지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2조는 구유지상 사유주택의 대부요율을 재개발지구일 경우는 10/1000으로 인하하고 생보자일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제22조의2에서는 2회 이상 대부 재산을 입찰해서 유찰 시에는 요율의 20% 이내를 감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30조3 잡종재산의 수입을 위해서 신탁회사에 신탁을 의뢰할 수 있도록 새로이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제38조의2 매각대금의 감면 규정에서는 매각감면을 받는 매각재산은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동기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을 받아서 이내 전매하는 그런 불합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다음 조문을 현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 조항입니다. 제4조 마을회관 등을 위탁받아서 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제재 규정으로서 사용료를 추정토록 했습니다. 제6조 공유재산심의

회에서 심의대상을 축소했습니다. 다음 10조 용도폐지 규정에서 10평 미만 또는 1,000만원 이하 재산은 공유재산 심의 기능을 생략하도록 해서 소규모 필지의 용도폐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17조 잡종재산의 현황을 파악해서 대상재산을 축소했습니다. 다음 제24조 경계가 애매한 점용면적에 대한 건물 대부료의 산출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조 대부료의 사용 제한을 재산유지 관리에만 사용하는 식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27조는 대부료의 연체요율에서 일반 년 15%이고 재개발지역에서는 년 10%로 요율을 인하했습니다. 다음 제44조는 청사신축계획은 사전에 수립해야 된다는 의무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삭제해서 청사신축을 쉽게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의 자구수정 11개 조항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써 공유재산관리조례가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노인회관 등을 무상운영 조건으로 위탁 운영받은 자가 수익 목적에 사용하거나 전대할 때에는 사용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주택재개발지구 내의 구유토지는 20년 년부로 매각이 가능하며 년 5%의 이자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점유 사유건물, 무허가건물은 제외합니다. 사유건물의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가액의 15/1000, 생보자는 10/1000으로 요율이 각각 인하가 됐습니다. 다음 대부재산은 경쟁입찰에서 2회 이상 유찰 시는 대부료를 2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습니다. 다음 대부료의 연체요율은 일반지역은 년 15%, 주택재개발지구는 10%로 인하했습니다. 다음 잡종재산의 수익을 위해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으로 전문신탁에 신탁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기업, 벤처기업 등에 재산의 매각대금을 감액해서 매각하는 경우는 전대하지 못하도록 특약동기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4월 30일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시행령이 '99년도 4월 3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방향은 새로운 시대의 경제도약을 위해 필요한 외국투자자의 유치와 벤처기업의 지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구 내 공유토지의 매각조건을 완화하고 저소득 생활보호자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된 현실적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蔣昭秀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賢植 財務局長님! 나오셔서 議事日程 제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金賢植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로 우리 종로구가 더욱 새롭게 변화되고 종로주민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吳弼根 委員長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님들에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오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은 수수료 현실화계획에 따라 '90년이래 적용해온 비현실적인 수수료요금 체계를 물가지수와 서비스요금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상위법령과 조례개정에 따라 신설 또는 삭제를 하였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수수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징수조례개정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증명 확인 발급사항은 현재 인감증명 외 45종목에서 삭제 22개 종목, 인상 15개 종목, 현행유지 9개 종목으로 조정되어 수수료 개정 후에는 2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은 현재 행정서사업 허가 외 17개 종목에서 삭제 10종목, 인상 6종목, 현행유지 2종목으로 조정되며 "위생관련 허가 및 신고사항"에서 공중위생법 폐지관계로 10개 종목이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이에 따라서 수수료 개정 후에는 18종목이 됩니다.

위생관련허가 및 신고사항은 현재 호텔업 신규허가 외 46종목에서 공중위생법 폐지로 37종목이 삭제되며 10개 종목이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24개 종목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삭제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총 100개 종목으로서 삭제종목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광고물 설치허가사항은 현재 31종목 전체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17조와 서울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삭제, 세목별 납세증명은 '94년 1월 세목별과세증명으로 통합,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검사증명은 상위법인 건축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삭제되었으며 그 외 67종목도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에 의거 삭제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상종목의 세부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6월 17일 종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상정해 가지고 '99년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 조례(안)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99년 7월 26일 종로구지방물가대책심의회에서 심의·가결되었습니다. 인상종목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상액의 기준은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 등을 참고하여 인상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인감증명은 원가분석액 837원,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465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418원을 참고하여 현행 30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인감신고에서 신규·변경·개인 등은 현행 25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였고 거주에관한증명은 현행 350원에서 4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개인정보문서의 열람과 복사는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155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139원을 참고하여 현행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무적증명은 원가분석액 1,716원,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543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487원을 참고하여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영문국제결혼 증명발급 및 재발급은 현행 3,3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출판사·인쇄소 등록신고는 원가분석액 1만 1,499원,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853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766원을 참고하여 현

행 550원에서 7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물품납품 실적증명과 물품 또는 공사사실증명은 각각 원가분석액 1,196원,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543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487원을 참고하여 현행 350원에서 각각 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은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고 입찰참가신청은 현행 55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대부신청과 공유재산 매수신청은 현행 550원에서 각각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대부신청은 계속대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세증명과 지방세 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징수유예증명은 원가분석액 1,580원,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543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487원을 참고하여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공장등록증명은 원가분석액 1,216원, 소비자 물가지수 적용액 543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487원을 참고하여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확인원은 원가분석액 1,216원,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543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487원을 참고하여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의 경계면시측량은 원가분석액 1만 2,620원,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8,531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7,656원을 참고하여 현행 5,500원에서 7,5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신청은 현행 550원에서 75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기관약국사실증명은 원가분석액 1,244원, 소비자물가지수 적용액 853원, 도매물가지수 적용액 766원을 참고하여 현행 55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는 새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를 구민과 함께 창출해 나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복지향상의 질적 향상과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으로 이해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吳弼根 金賢植 財務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蔣昭秀 專門委員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蔣昭秀 專門委員 蔣昭秀입니다. '99년 12월 13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수수료 현실화가 주요 내용으로서 그동안 현실화를 하기 위한 추진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12월 17일 국정실천 100과과제 선정으로서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문제가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1일자로 수수료, 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하도록 행자부에서 각 구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 5월 7일자로 세무1과에서 원가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10월 29일날 원가 검토내용과 도매물가, 소매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수료 현실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5일부터 '99년 2월 1일까지 개별 법규별로 개정내용을 검토를 해서 '99년 6월 23일자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붙여서 통과가 되었으며 '99년 7월 26일자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부를 해서 통과가 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는 수수료 조례의 총 본문 8개조와 별표 162종에서 본문 2개 조문과 별표 162개 종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먼저 본문은 제1조 목적조항에서 지방자치법 제 127조라는 자구만 삭제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127조는 사용료가 때문에 수수료 조례는 필요없는 사항이라 삭제하는 내용이 되었고 제6조제2항은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요 사항이 별표 수수료 징수 개정사항이 중요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별표는 162개

중 중에서 개정은 개정하고 난 후가 103종이 되겠습니다. 그 162종을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법률 개정한 것은 21건, 폐지가 120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21건, 새로이 수수료 신설되는 것이 61건 이렇게 해서 103건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수수료 징수·폐지를 규정한 관련법규를 우선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7조입니다. 이 법이 개정됨으로써 수수료 49개 항목이 폐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법 내용을 보면 다음의 경우에는 그 허가, 신청시, 신고시 또는 안전도 검사시에 각각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의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 구에서 정하도록 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9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한 37개 항목을 삭제하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99년도 2월 8일자로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공중위생법에 근거한 수수료 32개 종류가 폐지하게 되었고 공중위생법이 자유업이 되었습니다. 그 법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돼서 제3조에 보면 누구든지 업소를 개설하고 사실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신설을 규정한 법규입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에 의해서 61개 항목이 새로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개정안 분석입니다. 먼저 본문 8개 조 중에서 2개 조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1조 그 다음에 제2조 사유는 제1조는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었고 제2조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삭제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 수수료 중에서 광고물 폐지는 광고물 설치 허가로 인해서 49개 항목이 폐지되고 그중 공중위생 관련 수수료 해서 37개 항목이 삭제되며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서 삭제되는 것이 3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서 수수료가 인상되는 21개 항목을 한장에 나타냈습니다. 보면 현행 수수료액은 '90년도에

조정된 사항입니다. '90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매물가 지수는 39.2%가 인상되었고 소비자물가는 55.1%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물가를 반영하게 되면 수수료액이 개정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서민 가계 등을 생각해서 도매물가 지수를 적용을 해서 그에 조금 못미치는 율로 인상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21개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감증명입니다. 인감증명이 발급 건수가 가장 많습니다. 20만8,000건에 해당되는데 가장 많이 애용하는 건수입니다. 이것은 현행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된 사유가 사실상 도매물가지수 39.2%를 적용하게 되면 400원 이상 된다는 400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증명인 세목별 과세증명인데 2만5,670건인데 350원에서 500원으로 조정이 되고 세번제로 많은 것이 2번 지방세 완납증명인데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발급건수는 1만7,540건입니다. 이것은 '98년도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즉 내려가서 또 많은 것이 맨마지막에 21번에 입찰참가 신청입니다. 이것은 550원인데 천원으로 인상했습니다. 1만1,984건이고 그 다음에 20번 인감신고가 250원에서 3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이 수수료 현실화 한 것이 현재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조정을 했습니다. 8개 구 조정내용을 구리 구 안과 대비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인감증명은 송파가 가장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500원이고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구와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차이나는 것이 맨마지막에 입찰참가신청 우리 구에서는 천원인데 송파에서는 5,000원부터 만원으로 규정했고 도봉에서는 천원에서부터 2만원까지 이 천원에서 2만원은 입찰금액 기준으로 해서 입찰금액이 많을 때는 수수료가 많게끔 개정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심의 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연도별 물가상승률을 '90년도부터 즉 참고적으로 적시를

해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물가는 55.1%, 도매물가는 39.2%가 인상된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인상된 21개 수수료의 평균인상률은 45.8%이며 전체건수로 대비는 9.34% 인상되겠습니다. 이 인상률은 그동안 물가 인상률을 감안한 인상률이며 기이 개정한 타구 인상률과도 유사한 내용으로 수이자 부담원칙에 의거 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蔣昭秀 專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金福同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福同委員 재무국장께 물겠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조금 늦게 된 것입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조금 늦었습니다.

○金福同委員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현재 25개 구 중에서 8개 구가 조정했는데 가격면에서는 다소 중하위권이라 생각이 됩니다.

○金福同委員 다른 구보다도 먼저 앞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뒤에 하는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財務局長 金賢植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각종 제증명의 가격 요율 인상은 우리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다소 인상을 늦췄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정도 저희 구에서 판단하기로 현재 최적정 시기가 아닌가 해서 지금 상정했습니다.

○金福同委員 %를 보게 되면 %가 높죠?

○財務局長 金賢植 45.8% 됩니다.

○金福同委員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늦게 했다는데 부담을 생각했다라면 조금만

하지 많이 했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지금 인감증명같은 경우는 '88년도의 안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金福同委員 그리고 입찰신청을 보면 말이죠, 우리 구에서는 천원씩 해냈죠? 보면 타구에는 5천원, 2만원 이렇게 했는데 천원씩 한 이유가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저희들이 현재 판단한 것이 천원 정도로 해서 무리가 없다

○金福同委員 이러한 것은 좀 올려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타구에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財務局長 金賢植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550원, 노원은 650원, 강서는 천원 이렇게 합니다. 강북구는 800원

○金福同委員 도봉같은 데 2만원으로 되어 있죠?

○財務局長 金賢植 예. 그것은 입찰가격에 따라서 천원부터 2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예를 들어 10억이다 하면 이 2만원으로 됩니까? 10억짜리 입찰이 된다고 하더라도 2만원 받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예. %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金福同委員 한 건으로 계산하는군요.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천원인데 다른 데는 5천원, 만원, 2만원 그러는데 우리도 중간정도로 좀 하게 되면 구수입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 대신 다른 공공요금에서 제하고 이런 것에서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저희들이 물가대책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에서 올린 안이 아마 심혈을 기울인 안이다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金福同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金福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감기가 들어서 음성이 안 좋습니다. 이례를 해주십시오. 주택재개발지구 내의 구유재산 매각을 했을 경우에 20년에 연 5% 적용해서 19년거치 20년 상환입니까? 이것은 일괄 20년에 원금 전액 분할상환입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분할상환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요즘 재건축 단지 내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개발시에는 그랬는데.

○**財務課長 李東明**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도시계획법상 어떠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면 재건축은 일괄 매입을 해야 한다는 시가에 의해서

○**財務課長 李東明** 일반지구와 마찬가지로 해야 됩니다.

○**丁炳煥委員**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유재산 대부료 산출근거가 1000분의 25라고 했잖습니까? 1000분의 25라고 했을 경우가 입찰했을 경우나 똑같은 금액에서 예정가가 1000분의 25입니까? 예정가를 넘을 수도 있습니까?

○**財務課長 李東明** 대부료 말씀인데요 대부료는 거의가 입찰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소 필지 기존 주택들이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1000분의 25라는 것은 일반주택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 33.3%짜리, 13.3%짜리가 있고 81.8%, 20%, 25%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소비자물가지수 도매물가지수를 비교하고 타구를 비교해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타구는 입찰 물건 금액에 따라서 천원부터 2만원까지 있는데 우리 구는 입찰금액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천원씩 입찰참가 신청료가 부과됩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예, 그렇습니다.

○**丁炳煥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우리 종로지 역에도 재정이 열악한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것

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하는데 조금 인상해서 좀 수수료 받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보충질문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봉이나 송파구에서 천원부터 2만원까지 송파에는 5천원에서 만원까지 여타 구에서는 돈을 안받는 데도 있습니다.

○**丁炳煥委員** 중구는 안받내요.

○**財務局長 金賢植** 용산은 250원 받습니다. 그리고 성동, 광진, 중랑,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은 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천원 받는 것은 아까같이 특정 2개 구가 도봉이나 송파에서 5천원부터 2만원까지 받는데 아직도 여타 구는 250원부터 550원, 650원, 천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구가 아직도 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550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부득이 현재 천원씩 이렇게 인상했습니다.

○**丁炳煥委員** 우리 구는 다른 구와 틀려서 문화유산이 많이 있어서 세금징수에 많은 세금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상황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丁炳煥委員께서 건전재정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재무국장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인상안이 천원인데 인상한 연후에 위원님들 협조를 해서 전체 서울의 추이를 봐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인상안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다수 7, 80%가 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일단 천원으로 인상을 해놓고 2000년도 가서 초에 다소 검토를 해서 인상하도록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丁炳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로는 이번 징수조례 평균치가 거의 50%에 육박

합니다. 타구에 25개 구청 중에 8개 구청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머지가 현재 안되고 있는데 종로구에서 서둘러 가지고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로는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재무국장이 **李炯述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종로구의회 진도가 앞서가지도 않고 뒤에 가지고 않고 중간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는 서로 추이를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 올린 시점이 제일 적절하다 그래서 현재 이 안을 제안을 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감증명같은 경우 '88년부터 한번도 인상이 안되고 이러한 45.8% 인상안이 10년간 인상안입니다. 당해년도 안은 한 적을 때는 3.8%에서 4.2 연간 도매물가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인상안이 적절할 시기다 이렇게

○**李炯述委員** 우리 주민들이 보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10년동안 손을 대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50%를 올리면 주민이 느끼는 피부에 오는 느낌은 대단합니다. 근 50%를 한푼에 올린다는 저거는 다른 구에 절반이상 하는 것을 추이를 봐가지고 우리 구가 이러한 서민들 가계에 심적 부담이 가는 부분은 여러 구에 참작을 해서 해도 괜찮겠다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봐가지고 내년도 초에 가서 다시 한 번 하겠다 이것은 자주 일어나는 것이 좋지 않죠. 이것은 한 몇 년 뒤에 한번씩 4, 5년에 한번씩 그때 가서 금액을 조율한다든지 하면 좋을 텐데 근 10년동안 안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각 구의 추이가 이번 정기회의 때 거의가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종로구 안과 대동소이하다 전체적으로 진도가 이렇게 됩니다. 거의가. 그래서 이번에 상정한 안이 타구와 공동으로 상정을 하고 여태까지 안올린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종 소비자물가나 도매물가지수의 연도별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현재 예를 들어서 물품납품실적증명을 350원에서 500원으로 했을 때 사업하시는 업자분들이 그렇게 현재는 부담을 느끼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과연 일반 버스 교통료나 각종 유류 공공요금 인상안이 이것이 구에서 하는 각종 수수료가 낮게 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이 덜하지 않느냐 생각되고 타구에서도 전 25개 빠진 구가 전원이 이번에 상정하기 때문에 종로구가 앞서가지도 않고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李炯述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부분은 5년단위로 해서 올릴 적에 금액이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피부에 느끼는 것이 덜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보통 공공요금은 몇% 오르느냐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둡니다. 어느 공공요금을 근 50%를 한푼에 올리는 그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일찍이 느끼지 못했기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게 충격적인 것을 피한다고 하면 몇년 사이에 한번씩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몇년에 한번씩 다른 소비자물가 여러 가지 물가가 올랐으니까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올린다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 우리 주민들의 충격적인 면은 탈피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올려놓고 10년 후에 가서 느닷없이 50% 올리면 우리 종로구 주민들이 피부에 느끼는 것이 다른 구하고는 틀린 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안 밟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李炯述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崔康洵**幹事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崔康洵委員**입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들이 거의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수수료정수를 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 입장에서 전부 움직이는데 정부시책에서는 물가를 9% 정도를 상승시키겠다 했는데 지금 수수료정수조례를 보면 45.8%로 올린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는 IMF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층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살아가는데 지난번에 李東奎委員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IMF가 지금 닥쳐와 있는데 물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45.8%라는 수수료 인상은 물가상승 요인이 되어 어려운 서민생활에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賢植** 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崔康洵委員님께서 각종 평균 수수료가 45.8% 인상된 게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현재 저희들 인상품목이 21품목이고 미조정이 21개 품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을 하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88년도에 조정이 돼서 그때 인감증명이 300원이었습니다. 이번에 400원으로 했는데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높은데 과연 이러한 가격이 원가계산을 한 연후에 평가해 보면 현재 평가금액이 418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저희 최저선으로 해서 어느 정도 추이를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된 것입니다. 또 이러한 주민 부담이 물론 300원에서 400원도 부담이 됩니다마는 과연 인감증명을 떼려 가는 분 차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고 가서 때는 인감증명 비용이 다른 공공요금보다 비싸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가 분석을 해보면 400원을 받지만 원인적으로 원가가 837원 인감증명 하나 때는데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은 어느 정도 체면을 유지하면서 최저선으로 잡아서 그대로 유지해서 앞으로는 李炯述委員님께서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매년 최저선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올리도록 구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예, 崔康洵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康洵委員** 그리고 이 종로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지금 경계선을 해놓고 보면 종로는 돌아오는 종로라고 하지만 종로는 성북과는 이 세금관계가 모든 것이 길 하나 놓고 서민들 차이가 많이 납니

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길 하나 놓고 성북구와 타구에 살려고 그리고 종로를 자주 피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물론 李炯述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차츰차츰 이렇게 올려야지 갑자기 이것 주민들이 봤을 때 45.8% 올랐다 이러면 물론 계산 따지게 되면 종로구에서 상당한 주민들한테 인감 하나 떼더라도 물론 손해를 보고 도와드리겠다 하지만 주민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점을 참고삼아 가지고 45.8%란 것은 우리 종로주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이런, 인감 하나 떼는데 400원이다, 500원이다 하는 것은 별거 아니겠지만 전체로 놓고 볼 때는 부담스러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옥외광고란 것은 그 네온사인 돌아가는 거 그거 말씀하십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네.

○**崔康洵委員** 종로구가 지금 지방자치체가 되어 있으면 전부 우리 종로구로 넘어와야지 어떻게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현재 그것은 법규정상 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20m 이상의 관리는 시에서 관리 유지보수도 하고 하는 기본 법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崔康洵委員** 그럼 계란 노란자는 서울시에 싹 빼먹고 돌출간판 조그만한 거는 구에서 관리하고.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빨리 시정을 해야지요.

○**財務局長 金賢植** 앞으로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지방자치가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관계법이 개정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崔康洵委員** 이런 걸 점차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같아 가지고는 당장 올해에 이걸 마무리짓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라고 말만 했지 우리 구의원들도 그래요. 지방자치면 우리 종로구 구의원님들이 동네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구의회 힘인데 지금 공사 같은 것도 그래요. 직접 가서 슬쩍 해버리고 우리는 해달라 해달라 할 때는 안 해주고 어느 날 12월 달 가니까 슬쩍 깔아주고 말이지. 이걸 동장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혀서 일하는 것처럼 해놓고 우리

구의원들은 허수아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을 지방자치면 우리 무슨 공사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서로 동사무실에도 체면이 서고 우리도 체면이 서게 우리는 해주시오 해주시오 해도 안 해줘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7·8개월 후에는 종로구에서 슬쩍 하는 거 이것이 꼭 서울시에서 옥외광고 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상당히 제가 불만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局長님들이 밑에 직원들한테 잘 다스려 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체면이 서고 또 우리들이 와서 무슨 민원을 해결할 때 좀 더 해결이 신속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財務局長 金賢植** 이 점은 吳錦南 副議長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공사나 지역의 각종 사항은 사전에 구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사전에 도움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은 알려주는 것보다도 도움을 받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나 그러한 지역의 현안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아니 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안 해주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구에서 하는 것처럼 해버리니까 우리가 주민들한테 체면이 안 선다 이겁니다.

○**財務局長 金賢植** 그런 사항을 구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고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康洵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市民行政委員會에서 제가 幹事로 있을 때 정화조 거기에 대해서 인상을 시켜드렸어요. 그러면 정화조가 과거에 우리 주민 입장으로 우리가 겪어본 일인데 꼭 정화조 치우고 난 다음에 더 잘 쳐준 것처럼 해가지고, 새벽에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부담스러운 것처럼 해가지고 배를 받아가요. 예를 들어서 1만 7,600원이면 3만5,000원을 받아가요. 그래서 이번엔 이걸 올려주면 부정이 없겠구나 했는데 역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징수 문제도 그래요. 이런 것도 갑

자기 올리지 말고 차근차근 올리면 주민들이 봤을 때 만약에 45.8% 올리면 45.8% 올릴 때 구의원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賢植** 현재 이러한 정화조 관계, 사후관계, 그리고 인상 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사후관리나 이런 서비스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관 부서의 局長으로 하여금 좀더 청결하게 진정한 서비스를 베풀 수 있도록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상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종로구가 절대 부담을 주는 이런 행정에 저희 종로구가 앞서고 총대를 메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중 정도로 지금 따라가고 타구도 상정해놓은 이런 상태인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弼根 崔康洵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吳錦南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錦南委員 吳錦南委員**입니다. 局長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대부사용을 공개입찰 했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유찰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감액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란 것은 입찰공개에 1회에 한해서 20% 감액입니까? 아니면 2회에 대해서 감액입니까?

○**財務局長 金賢植** 총액기준으로 당초 총액기준에 20%입니다.

○**吳錦南委員** 입찰을 1회 했을 때요? 2회 했을 때요?

○**財務局長 金賢植** 1회든 2회든 간에 총액을 기준해서 만약에 1억이면 그 1억에 대해서 20%인 8,000만원까지

○**吳錦南委員**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은 입찰을 봤을 적에 한 번을 봐서 20% 감액이나 이 애기죠.

○**財務局長 金賢植** 공개입찰을 해서 예정가격에

2회 이상 유찰 시에는 20% 집행기관이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吳錦南委員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20%면 20%라고 확정을 해야지 조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유도리가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따라서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면 20%란 문구가 확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財務局長 金賢植 그런데 상위지침이 이런 재량권에 아까 같이 조정한다 라는 강제조항보다도 재량의 범위를 포함해 두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을 포함해 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도 이 법칙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吳錦南委員 유도리가 좀 있게 글귀가 되어 있네요?

○財務局長 金賢植 그렇습니다.

○吳錦南委員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6조를 보면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1항제3항 심의사항 중령 제84조제3항 각호의 1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 3항의 1에 보면 '33㎡ 이하 토지 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항에 보면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 이와 같은 10평 미만 시가가 1,000만원 미만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財務局長 金賢植 우리 구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거의 1,000만원 이하가 없었습니다.

○吳錦南委員 1,000만원 이하가 없는데 이걸 만들어 두면 앞으로 그걸 시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東明 財務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령 제84조3항 각호1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은 심의를 생략한다 하는 내용은

다른 법에 의한 거기 때문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인 환지처분과 법원의 판결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타법의 법령에 확실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내용이지요 두번째, 10조2항에 가서는 원래는 표준안에는 330㎡ 이하의 100평 이내의 용도폐지는 심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구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10평 이내는 심의를 하지 않고 빨리 용도폐지나 행정규제라고 보는 측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0평 이하의 심의를 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吳錦南委員 취득도 그렇고 처분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財務課長 李東明 아닙니다. 이건 용도폐지입니다. 용도폐지라 함은 공공재산인 도로나 하천 이러한 재산이 잠종재산으로 바뀌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吳錦南委員 용도폐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한단다?

○財務課長 李東明 네.

○吳錦南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吳錦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委員!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례증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財務局長님과 關係公務員께서는 돌아가시고 都市計劃課長은 답변서에 앉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3. 清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鐘路區廳長 提出)

(12時15分)

○委員長 吳弼根 議事日程 第3項 清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區域(建築計劃) 變更(案)을 상정합니다. 都市管理局長이 공석이므로 都市計劃課長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안녕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吳弼根 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委員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구 도심재개발 청진구역 제6지구의 도심재개발구역(건축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진구역은 '79년 11월 22일 구역 지정되어 7지구와 19지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7년 10월 28일 청진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구역지정변경 및 사업계획이 결정된 바 있으나 금번에 제6지구 토지소유자가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작성함에 따라 기존에 결정된 사업계획 중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용은 연면적 및 용적을 증가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결정된 연면적은 54,952㎡였으나 주차장과 부대설비공간 설치 등을 위한 지하 7개 층 설치에 따른 42,864㎡와 지상부 증가 4,675㎡를 포함하여 총 47,539㎡가 증가하여 총 연면적 102,491㎡로 변경되고 용적을 변경은 당초 용적이 800%로 결정되었으나 대지면적의 약 20%인 1,389㎡를 공개공지로 설치함에 따라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조례 제9조제2항 및 건축조례 제62조3항2호 규정에 의거한 용적을 완화적용으로 80%가

증가된 880%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99년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한바 별지 내용과 같이 구역지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요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진구역 제6지구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清進區域 第6地區 都心再開發區域(建築計劃)變更(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鐘路區廳長)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吳弼根 都市計劃課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네. 金以煥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以煥委員 金以煥委員입니다. 課長님! 오신지 며칠 안됐는데 업무파악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1주일 동안 했는데 아직 제대로 파악을 하지는 못 했습니다.

○金以煥委員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네.

○金以煥委員 그럼 지금 현재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나 됩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난 11월 15일부터 29일까지 공람공고를 했는데 반대 의견을 한 그 내용이 지금 문서화가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가

○金以煥委員 그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요. 몇 사람인데 몇%나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지금 내용이

○委員長 吳弼根 잠깐만이요. 마이크가 꺼진 상태니까 지금 속기사 속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요. 그러니까 말씀을 좀 크게 하세요.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지금 접수된 토지소유자 동의 내용을 보면 총 토지소유자가 55명입니다. 그 중에 동의자수가 39명이고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율이 70.0%입니다. 그 다음 건물소유자수가 총 42명입니다. 그 중에 건물동의자수가 29명으로서 69%인 % 이상 동의된 걸로 자료가 접수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몇 분이냐 하는 얘기는 드릴 수 없고 일부 반대하는 분이 계시긴 합니다 하는 위원님들께 그 중에 총 몇%다 하는 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金以煥委員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전면 해지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한 4년 전부터 본격화해서 청진구역을 개발하려고 권석 부구청장이 외국까지 갔다 오고 했는데 최고의 청진동을 만들겠다 하는 이런 구상 하에서 열심히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종로구에서는 지금 사실은 문화재 이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요새 건물도 하나씩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청진동 하면 우리 종로구의 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 개발을 시켜 가지고 정말 종로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것들이 본 위원 생각인데 이렇게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니 그 분들이 어떤 뜻에서 반대를 하는지 그 내심을 확실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나와있는 대로 보면 층수가 높고 뭐 몇 층 이하로 하게 되면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반대하는 의견들이 명분으로 봐서 뚜렷하게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종로구 개발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보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계속 추진해서 최소한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종로구 개발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데 課長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우선 그 법에는 국법과 실법이 있는데 '96년 6월 29일날 실법이 개정됐다. 그 이후로 신규로 지정된 재개발구역에 한해서 그 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81년 8월 27일 사업지정이 됐기 때문에 실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두번째로 6지구 토지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동의없이 신청되었느냐? 이걸 주민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결정해서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사업계획 인가 신청 시에는 분명히 주민들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그 단계가 오지 않았으니까 대다수가 반대한다, 찬성한다 하는 얘기는 시기상조다.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金以煥委員 잠깐만이요. 그러면 찬성자가 몇 명, 반대자가 몇 명 접수가 안됐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네.

○金以煥委員 그러면 여기서는 잘 모르겠네요?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지금 상태로는 현재 건축계획서가 접수된 내용을 아까 말씀대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실 자체가 인가신청서에 접수했다면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얘기지만 사업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나중에 인가신청 그것이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인가신청의 찬반이 확실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접수된 내용을 보면 거의 %가 찬성된 걸로, 저희가 왜 안 밝히느냐 하면 인가서류에 첨부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밝힐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분한테 이걸 말씀드려야 주민들끼리 싸움만 될 것이고 분명히 이것은 공람공고라는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해서 변경이 내려오면 이 변경 내용에 따라서

○金以煥委員 그럼 오늘 여기 몇 사람이나 왔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찬성하는 분 세 분, 반대하는 분 세 분 이렇게 여섯 분이 오셨습니다. 지금 委員님! 제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는 분들 의견도 존중해야 하고 찬성하는 분들 의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찬반이 갈림길에 있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을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변경승인이 나오면 신청자가 주민동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인가신청,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을 닦할 수는 없다

○金以煥委員 신청서를 서울시로 올리는데 서울에서 이것을 동의를 얻어서 하라든지 무슨 결정권을 지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결론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신청절차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공람공고를 의견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이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金以煥委員 여기서 이렇게 올릴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올릴 겁니다.

○金以煥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宣相善委員 宣相善委員입니다. 먼저 鄭鎮皓 도시계획과장으로 오셨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를 드리고 전임 張東祐課長께서 도시계획과장으로 계시면서 우리 종로구에 해야 할 사업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의원들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가는 사람을 이렇게 평을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새로 오신 鄭鎮皓課長께서는 그런 말을 듣기를 바라고 물론 잘 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종로구에는 상세계획구역이 많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96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서 우리 鄭課長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정화계장님 계시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계장님하고 이렇게 얘기 자주 해서 이제 오셨으니까 그 내용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청진구역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청원서도 오고 우리

의원들한테도 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6지구 사업계획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코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예, 그렇습니다.

○宣相善委員 이것은 지난 당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었던 이병화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세계 속의 가장 아주 이름있는 명소를 만들겠다고 장담할 정도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몇년이 지난 오늘까지 뭐 하나 제대로 없이 거기 실비용역비 이러한 것만 계속 들어갔지 끝내준 게 없습니다. 프랑스 라데방스를 비교하고 뭐 캐나다 토론토를 비교하면서 거기보다 훨씬 더 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주민 소견을 해야 되니, 안해야 되니 참 안타깝습니다. 鄭課長님! 이것도 청진동 개발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것을 맺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6지구는 주민들로부터 말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왜 반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그 내용은 확실히 좀 찬성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다 찬성하는데 몇분만 반대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체가 반대한다고 과장님!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찬성과 반대가 어느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열심히 하겠고요 지금 현재 종로구에 접수된 서류에 의하면 정식으로 서류에 접수된 건축변경을 이런 서류로 보면 첨부된 서류와 같이 3분의 2가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정확히 못밝힌 것입니다. 이래서 건축계획이 접수되고 정확하게 구비서류가 다 맞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적 서류가 들어오니까 정상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과정이죠.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들어오니까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또 공람공고를 하고 공람공고 의견청취해서 서울시에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서울에서 승인이 되면 이 사업계획에 대한 인가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되면 정확하

게 찬반의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미도래했다 찬성 숫자가 총 몇명이며 반대 숫자가 몇명이다 그 자체는 논할 때가 아니다라고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솔직히.

○宣相善委員 지금 鄭課長님께서 청진구역 개발지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보고 계십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봤습니다.

○宣相善委員 그러면 기 7지구와 10지구는 '79년 12월 22일날 사업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지하권 개발을 뒤 밑에 자연채광으로 해서 천연 평이 지하에 공원이 생기고 이렇다고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97년 10월 28일날 사업계획이 서울시 고시 339호로 내려오면서 지구분할을 9개에서 19개로 하라 그리고 지하권 통합개발을 위한 즉 용역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층 개발은 개별적으로 지구별로 하라. 통합한다는 것은 좋은지 몰라도 개발 자체는 어렵지 않겠느냐 각 지구별로 개별적으로 하라 해서 2개 지구는

○宣相善委員 본래 당초 계획했던 그것하고는 변경이 되었네요? 권역별로 하다 보면 지하에 연결은 안되겠죠?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예.

○宣相善委員 그러면 과거의 이병화과장은 굉장히 원대한 꿈만 가지고 물거품으로 된 것뿐이네요. 결국은. 심지어는 이 종로구청 자리까지도 같이 연결한다고 설명했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좀 해달라고 저거 했는데 물거품으로 돌아왔습니다.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가능한 한 지구별로 건축계획이 들어오면 전체 지하권을 지구별로 반대, 찬성이 있다 보니까 지구별로 건축계획을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통합이 되게끔 그렇게 유도는 해야 되겠습니까마는 하나하나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아무튼 공람공고 기간이기 때문에 공람공고를 거쳐 사업인가신청시 찬반을 찬성이

많으면 하겠죠. 따라서 그러는데 4대문 안에 20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했죠? 그런데 실지로 청진동 6지구는 그보다 높은 24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할 수가 있나요? 가능한가요?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도심부관리기본계획 안이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마는 그 내용이 20층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20층 미만이 아니라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24층으로 이미 사업별 승인 승인 이 났던 겁니다.

○宣相善委員 이것 10% 올려 가지고 880% 용적률은 가능할까요?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가능합니다.

○宣相善委員 물론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든 의원이 용적률은 높고 층수 고도제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건상 여러 가지 주변의 고층이 들어감으로써 가려지는 것도 있을 텐데 그러한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좋은 개발이 되거든요.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재량이 아니고 법에 공매공지를 내놨을 때는 용적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화하는 계산방법이 있으니까 공매공지를 내놓으면 그만큼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宣相善委員 공매공지라면 호수공원처럼 만들어진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다수가 건축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내놓으면 완화 적용으로 해서 계산을 합니다.

○宣相善委員 아무튼 청진동6지구가 빨리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돼서 개발에 들어갔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鄭鎮皓課長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개발이 되도록 주민들의 소리가 나지 않고 다 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설득도 시켜주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弼根 宣相善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李炯述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炯述委員 李炯述委員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청취 듣고 싶은 것이 용적률 880% 하고 연면적 5만4천에서 10만2천 늘어나는 그 부분 거기에 대한 얘긴데 그러면 용적률 880%는 조금 전에 법 근거를 봤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있고 그런데 5만4천에서는 먼저 처음에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지층이 없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지하가 없었죠.

○李炯述委員 여기에서 분명히 얘기할 때 지하층에 아주 벨트를 만들고 해가지고 설명할 때는 지하층이 있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전체 마스터플랜을 할 때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구별로 분할개발 한다고 보니까 이 사업계획을 할 때는 지하층이 없는 상태로

○李炯述委員 우리 의견청취 할 때 지하부분이 있었던 말입니다. 담당과장이 이병화과장이 와가지고 설명할 때 지하층이 있었습니까. 그 얘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담당계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 지하1층까지는 있었다고 합니다.

○李炯述委員 지하1층 면적이 5만4천 속에 들어갔던 겁니까?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해 가지고 먼저 의견청취할 때 부분하고 지금 자료 자체가 틀리면 맨날 들어와야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까? 그때 분명히 지하층이 있었거든. 아주 그래서 국제적인 벨트 자랑스러운 것을 만든다고 해서 설명이 아주 위원들을 현혹시킬 정도로 해놓고 자료를 보니까 지하층 부분이 생소하게 지금 새로 나타났거든요. 그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감안이 안됐다 그 관계 모르고 있었습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그 당시에 총괄적인 계획을 할 때는 전체를 계획을 할 때 1층 면적만 넣어서 했겠죠. 그러나 지금은 상세한 한 지구에 대해서 건축계획이 들어오니까 하나하나 개별심을 하고

○李炯述委員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우려를 하

고 걱정한 부분이 물론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종로관내에 상설지구로 3군데가 있었거든요. 두군데는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 한군데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 애초 출발할 때 많은 세월이 돈을 갖다 계속 쏟아부어 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호지부지 종이조각으로 변하는 그런 것이 되겠다 무슨 일을 하나 받아주면 그 일을 매듭질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줘야 됩니다. 날짜 흘러가면 호지부지 하고 틀려져 버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의견청취해 가지고 내놓은 자료가 금방 얼마 전에는 지하층이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새로 집어넣고 하는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돼서 안되겠다 이러한 부분을 새로 부임해 가지고 얼마 안됐으니까 그러시지만 앞으로 종로 모든 도시설계 부분이든지 이러한 건이 나오면 전문인력을 거기다 댈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혼동이 되는 자료가 안나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 용역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나오면 그 돈이 꼭 일이 성사되도록 해주어야 하다 안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없애 버리고 일은 유명무실화되어 버리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답이 안나온다 그러한 것은 담당과장이 앞으로 직원들한테 세심하게 대화를 나눠서 우리 구세가 허비가 안되도록 또 이러한 일이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가 하나 올라오더라도 일관된 자료가 의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李炯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하는 委員 있음)

예, 丁炳煥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丁炳煥委員 丁炳煥委員입니다. 청진지역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우리 종로에서 한 중앙에 위치해있고 제가 구정질문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서울호텔 11층에 올라가면 정말 루핑 집으로 과연 서울에도 이러한 건물이 있는가 할 정도입니다.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여기 계시는 동료 위원님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79년 10월달에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구지정이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

체 면적이 19개 블록으로 해서 7만7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블록과 10블록은 이미 개발을 마치고 19개 블록에서 17개 블록이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구도 있고 반대하는 지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서울시나 우리 종로구청에서는 포괄적인 개발을 할 것으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지구 가옥주 285명 중 195명 약 75%가 종합적인 개발을 반대하고 자기들끼리 수복개발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복개발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개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반대와 찬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승인까지는 반대 승인을 지금 이렇게 해서 정확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인이나 차후 인가신청이 난다면 제 요건을 다 갖춰야만 사업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듣기는 6지구는 약 지주의 70%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꼭 6지구를 개발 이것도 수복개발해야 한다고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분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이해를 시켜서 전체 포괄적인 개발을 안하더라도 일부 블록이라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다 해가지고 아마 건축계획에 대한 변경 의견청취죠? 의견청취를 거친 다음에 서울시에 반대, 찬성이 있더라도 서울시에 계획을 올릴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올릴 겁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까지 올릴 겁니다.

○丁炳煥委員 사업승인이 난다면 인가신청을 할 때 아까 말씀과 같이 제 요건을 갖춰야 되겠죠?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예.

○丁炳煥委員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도 설득을 시켜서 6지구라도 블록별로 연차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유인물에 당초의 면적이 8,655.5㎡였는데 건축계획심의 통과에는 6,783.4

㎡로 왜 평수가 틀립니까? 대지면적은 똑같아야 될 텐데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면적은 변경이 없습니다.

○丁炳煥委員 여기 유인물에 변경된 것으로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건축계획심의 통과는 6,783.4㎡고 여기 당초 면적은 8,655.5㎡로 대지면적이 왜 틀립니까? 과장님!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앞에서 위원님 8,655.5㎡는 6지구 전체 면적이고 그 건축에 해당되는 것이 공공용지를 빼야 되겠죠. 빼니까 그 자체 건축설계는 지금 나와 있는 게 건축계획이거든요. 건축에 해당되는 면적은 6,783.4㎡입니다.

○丁炳煥委員 그러니까 약 2천㎡는 대지가 아니라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이것은 다만 건물이 올라갈 평수를 말씀한 겁니까?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예.

○丁炳煥委員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전체 포괄적인 개발은 저항에 부딪쳐서 못하더라도 부분개발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반대하는 민원도 최소화 시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좀 안 오게끔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課長 鄭鎮皓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丁炳煥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弼根 丁炳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 없으면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여기서 청진구역 제6지구 도심 재개발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

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2일과 23일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작성회의와 감사결과보고서채택 회의가 있으니 오전 10시까지 모두가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97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時56分 散會)

○出席委員 9人

吳 弼 根 崔 康 洵 吳 錦 南 玄 壽 漢  
丁 炳 煥 李 炯 述 金 福 同 金 以 煥  
宣 相 善

○出席專門委員

蔣 昭 秀

○出席關係公務員

財 務 局 長 金賢植  
財 務 課 長 李東明  
稅 務 1課 長 林晙宅  
都 市 計 劃 課 長 鄭鎮皓

